

# 2023년 04월 노사협의체 회의

**2023. 04. 18.(화) 13:00**

(주)동원개발 천안성성현장 안전교육장

# 안전보건 목표

동원개발 전 임직원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안전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안전 보건 경영시스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중대재해 0 유지
2. 위험성 평가 실행율 80% 달성
3. 스마트 안전시스템 정착율 80% 달성

2023년 01월 01일

경영책임자 이 성 휘



# 안전보건 경영방침

인본주의 경영실현을 핵심 가치로 삼고 우리의 고객과 서비스에 관련된 전 과정에서 임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실천한다.

## 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운영

제품, 활동 및 서비스에서 발생가능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적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유지한다.

## 2. 환경보호 사업장 조성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기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 활동을 실천한다.

## 3.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준수

법·규정을 준수하고, 내부 관리 기준 운영으로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 4.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회사·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한다.

2023년 01월 01일 경영책임자 이 성 휘



#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달성

### 시스템 강화

-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 TBM 운영방식 고도화
- 스마트 안전시스템 확대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반영

### 제도 이행력 강화

- 사전예방조직 보강
- 안전보건 제도 이행
- 이행실태 진단/사후조치
- 안전보건 가이드 전파

### 안전문화 / 의식 내재화

- 관리자 안전보건 교육 확대
- 우수현장, 근로자 포상확대
- 근로자 교육 숙지도 확인
- 불안전작업 중지



T/C#2

T/C#3

T/C#1

104동 16F

103동 17F

102동 18F

T/C#4

105동 15F

101동 18F

106동 16F

107동 19F

108동 18F

근린생활시설

1. 안전보건관리규정 (4차) 개정
2.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3. 2023년도 안전관리계획 \_ (주)동원개발
4.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5. 협력업체 건의사항



**1**  
Part

# 안전보건관리규정 (4차) 개정



## ※ 개정항목

제16조. 근로자의 직무

제40조.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제53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

제60조. 노사협의체회의의 의결사항



## ※ 개정항목

### 제16조. 근로자의 직무

1. 현장내 전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및 TBM활동 등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 근로자 작업중지권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의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1. 매일 작업시작전 안전조회 및 T.B.M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TBM(Tool Box Meeting)은 10분 내외로 팀별 또는 업체별 관리자 및 근로자가 모여서 실시하며 작업내용과 위험요인을 재확인하고, 안전한 작업절차가 무엇인지 서로 확인하는 위험예지활동이다.

### 가) TBM 실시 주요내용

-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개인보호구 착용 점검한다.
- 작업계획서(PTW포함), 위험성평가에 따른 작업내용별 위험요인 발굴 및 대책을 전달한다.
- 동종 사고사례 등을 전달한다.

2. 매일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의 합동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3. 매월 위험성평가 회의 실시 후 노사합동점검(1회이상 / 2월) 실시 하여야 한다.

4. 2개월 단위로 노사협의체 회의를 실시 하여야 한다.

5. 협력업체별 안전모 색상을 구분하여 착용한다.

## 제53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

1. 최초평가는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것을 말하며, 공사 착공시 전체작업과 모든 유해.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2. 정기평가로 매년 1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3)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3. 수시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시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제60조. 노사협의체회의 의결사항

1. 고시 제1항 제9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유해,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산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2. 2022년 12월 14일 노사협의체회의 의결사항 중 흑한기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매년 12.01 ~ 02.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6.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9. 위험성평가 소요비용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흑한기 방한용품 : 핫팩(6), 발열조끼(3), 안전방한화(3)\_안전인증서 첨부, 목토시(9), 귀마개(9), 귀덮개(9) 등)

3. 2023년 2월 15일 노사협의체회의 의결사항 중 근로자 전도방지 및 찰림방지용으로 각반(조임대)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 위험성평가 소요비용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Part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자료 인용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사건 관련 검토

#### 1.공사개요

- 공사명: 연세나을암요양병원 증축공사
- 공사기간: 2022.03.29. ~ 2022.08.31. (재해발생일: 22.05.14/ 공정률: 약45%)
- 공사금액: 80억원(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원청사: 쉐온유평트너스 / 대표이사: 정OO / 현장소장: 김OO / 안전관리자: 방OO
- 협력업체: 쉐아OOOO(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공사, 공사금액 7억) / 현장소장: 권OO

#### 2.사고개요

2022년 5월 14일 14시경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가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를 위해 원치를 이용하여 고정앵글 자재를 받던 중 건물 5층 개구부에 추락(높이16.5m) 중대재해 발생.

#### 3.피고인 및 선고결과

- 선고일: 23년 4월 06일
- 선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피고인	선고결과	위반사항	비고
원청	쉐온유평트너스 벌금 30,000,000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안법위반 2)안전조치의무위반 산안법위반 <b>*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재해치사)</b>	<b>*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b> 1.재해예방에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관한 조치
	대표이사 (정OO)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b>*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재해치사)</b>	
	현장소장 (김OO)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안전관리자 (방OO) 벌금 5,000,000원	업무상과실치사		
하청	쉐아OOO 벌금 10,000,000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현장소장 (권OO)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 중대재해처벌법 검찰 사건처리 현황 (2022. 11. 하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입건현황 : 58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의견 송치 현황 : 2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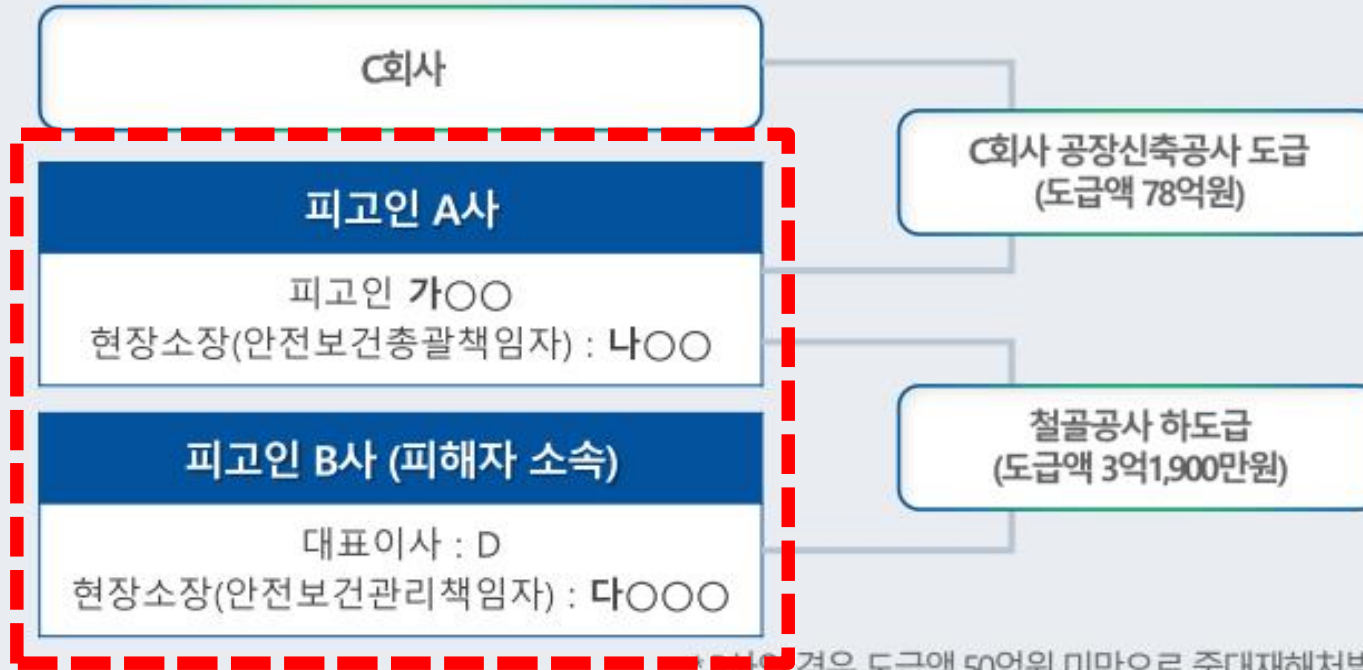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검찰기소 현황 : 6건(2022. 11. 30.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검찰불기소 현황 : 1건



# 대구 공장 신축공사 현장 하청근로자 사망 사건 기소사례

사안 개요(2022. 3. 29. 사고발생, 2022. 10. 19. 기소)



\* B사의 경우 도급액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24. 1. 26까지)

□ 원청인 A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B사 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 지붕에서 고소작업대에 안전대를 걸지 않고 작업 중 추락

의무위반 유형	①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②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④하도급업체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 판단기준과 절차 마련 각 불이행
법률적 쟁점	하도급업체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



## 고양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 사례

사안 개요(2022. 3. 9. 사고발생, 2022. 11. 30. 기소)

- 스스로 방어 - 근거 남김
- 모든 안전업무 지시 기록유지
- 공정회의 첫 순서 안전회의
  - 공사팀 지시사항 문서화
  - 협력사 안전활동 기록
- TBM, 교육, 시설
- 우수업체, 근로자 포상 동기부여
  - 외부 전문업체 교육, 점검
  - 현장정리



\*F사는 도급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2024. 1. 26까지)

### → 이행 결과 확인

□ 원청인 E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청업체 F사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약 190kg)에 충격

의무위반 유형	①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마련,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③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 각 불이행
법률적 쟁점	하도급업체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

**3**  
Part

## 2023년도 안전관리계획 \_ (주)동원개발





## 1 진단

- ① 기본 안전수칙 미 준수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
- ②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 제거하는 예방 체계 미비
- ③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
- ④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인식
- ⑤ 안전 의식과 문화는 여전히 미성숙

## 2 기본 원칙

- ① (책임성)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을 지원
- ② (현장성) 안전보건 정책은 결국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해야 하므로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정책이 단절 없이 전달되도록 설계
- ③ (혁신성) 안전보건 법·제도 및 정책, 중대재해 예방기법과 방식, 안전의식과 문화 전반에 걸쳐 기존의 관점을 넘는 혁신적 방안 모색

## 전략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 산업안전 정기감독은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및 기획감독을 통해 **엄중 제재**
- 위험성평가지 현장 실행력 제고
- TBM 활성화 - 사업장별 정기·수시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구조화
- 관리감독자 역할 강화
  - 작업·공정을 가장 잘 아는 **관리감독자가 위험요인 파악 등 핵심역할**을 하도록 가이드 마련 및 교육\* 강화
- 산업안전 정기감독: 위험성평가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23. 감독계획)
  - 위험성평가 실시·이행\*, 사고사례 분석 기반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이행 여부를 필수 확인
  -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인지, 참여 여부, 사고사례 공유 등 중점 확인

## 전략2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 **추락·끼임·부딪힘** : 3대 사고유형 현장 중심 특별 관리
  -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특별 관리(8대 요인 핵심 안전수칙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 적용)
-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LOTO(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 특별 관리
- **근로자 인터뷰 방식** 등을 활용하여 기획 점검 강화
- **원·하청 간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
-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 확립**

##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 ◆ 종전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되어 실시
-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과 개선대책의 효과성까지 차례로 들여다보고 마지막 으로 산업안전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법 제2장 등)의 안전주체들에 대한 역할 등을 확인한다.
- ◆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은 사업주·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등의 면담, 기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확인사항으로는
  - 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지
  - ②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 시키는지
  - ③ 아차사고·산업재해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하는지
  - ④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 ⑤ 수립한 위험성 개선대책을 실행하고 확인하는지
  - ⑥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안전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 등에게 공유·전파하는지 여부

■ 개요

#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중대재해 ZERO

기본과 원칙 정립

안전보건 역량 Level-Up

## 제도 이행력 강화

- 사전예방조직 보강
- 안전보건 제도 이행
- 이행실태 진단/사후조치
- 안전보건 가이드 전파

## 시스템 강화

-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 TBM 운영방식 고도화
- 스마트 안전시스템 확대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반영

## 안전문화 / 의식 내재화

- 관리자 안전보건 교육 확대
- 우수현장, 근로자 포상확대
- 근로자 교육 속지도 확인
- 불안전작업 중지

# 3. 안전보건관리계획 \_ (주)동원개발

## ■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현장통)

NO.	현장통 체계	노동부 현장점검 대응	관련 법령
1	근로자 안전교육 및 안전작업 확인 관리감독자, 특별, 정기)	교육실적 확인	산안법 제3장 29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	위험성평가	유해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및 점검	산안법 제 36조(위험성 평가 실시)
3	근로자 위험신고 및 대처	위험요인 신고, 작업자 의사소통	산안법 제 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4	위험치위취(신고) 기능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점검 조치	중대재해법 제 4조 제7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5	위급사이렌 기능	위험 대비 메뉴얼 마련 및 점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위험 대비 메뉴얼 마련 및 점검, 비상대피
6	퇴근/무사고, 사고 근로자 확인	재발방지대책 이행 및 재해발생 시 책임자 보고 절차	중대재해법 제4조 제1항 제2호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7	본사관리(본사 전달사항, 모니터링)	본사의 현장 정기점검 및 개선조치 체계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2장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시스템 보완중(3월 시행)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9	모든 자료 저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 ▶ 모바일 사용으로 협력업체 관리자/근로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접근을 쉽게함.
- ▶ 관리자 업무시간 단축 / 외국인 근로자 소통 /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 2) 평가 관리 법규 준수

### ■ 입찰 개시전 협력업체 안전수준 평가

####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9-가항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마련)

2. 업무절차 : 입찰 2주전까지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3.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주요 내용

- 본사 전담조직 구성(100억이상 3개현장,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본사조직표, 산업안전보건비사용계획

- 현장조직표, 전공정 위험성 평가, 평가표내 평가기준 이행계획, 비상대피, 의사소통

- 주요공정별 안전작업대책(작업시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중 해당공정 이행계획)

### ■ 안전보건관계자 평가 실시

#### 1. 관련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2. 평가대상

협력업체 현장소장 / 협력업체 시공관리자 / 동원개발 시공관리자 / 동원개발 현장소장



# 3. 안전보건관리계획 \_ (주)동원개발

## 3) 위험성평가 평가 이행 확인

### ■ 위험성평가 안전작업 확인

위험성평가 등록부											
현장명 : 천안성성 비스타동원 신축공사											
업 체 명	(주)아성 엔지니어링		위험성평가						평가일시 : '22 - -		
작업명	기계설비공사										
세부작업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안전보건규칙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1. 자재반입 가공, 운반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 착용하고 자재 하역, 운반 중 협착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8-12-2013	작업전 개인보호구 확인후 작업	하(1)	소(1)	낮음(2)	자재 반입 운반 작업 중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낮음(2)			
2. 기계설비공사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 착용하고 작업 중 부딪히거나 협착, 깔림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8-12-2013	작업전 개인보호구 확인후 작업	하(1)	소(1)	낮음(2)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배관, 덕트 작업 실시	낮음(2)			
	안전대 미 착용하고 배관작업 중 추락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8-12-2013	작업전 개인보호구 확인후 작업	하(1)	중(2)	보통(3)	배관, 덕트 설치 작업시 안전대 착용 철저	낮음(2)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관리자 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작업자 확인</div> </div>											
관리자 확인	협력업체		시공사		근로자 확인						
	담당반장	현장소장	시공담당	안전관리자							



PE게시판 (포맥스3T, A4 지퍼백) 양면

## 4) 현장 점검방법 개선

### ■ 본사 및 고용노동부 정책 실행 위주

- ▶ 위험성 평가 현장 이행여부 관리자 확인
- ▶ 작업 공정의 위험요인에 대한 작업자 숙지 및 이행 여부
- ▶ 협력사 관리자/ 신호수 전문기관 교육이수
- ▶ 위험요인 신고 포상실적 및 우수 근로자 포상실적

### ■ 스마트 시스템 활용도

- ▶ 관리감독자 활용 실적 평가

관리감독자 : 협력업체 현장소장 / 협력업체 시공관리자 / 동원개발 시공관리자

- ▶ 작업자 위험요인 신고 및 개선조치 실적

### ■ 모든 점검시 시공관리자 동행 점검

- ▶ 협력사 + 동원 공사팀

## 5) 신입 및 경력입사자 안전보건 O.J.T교육

### ■ 안전보건 업무 및 당사 안전보건가이드라인 공유

- ▶ 대상 : 시공 및 안전보건 직군 대상으로 현장중심 교육 4시간



점검/평가 기준



관리자의 활동여부

## 6) 재해 다발현장 관리

- 점검 강화 (외부 컨설팅 + 본사) : 특별 합동점검
- 개선계획 발표 (소장회의)
  - ▶ 대상 : 2회/년 이상 부상재해 발생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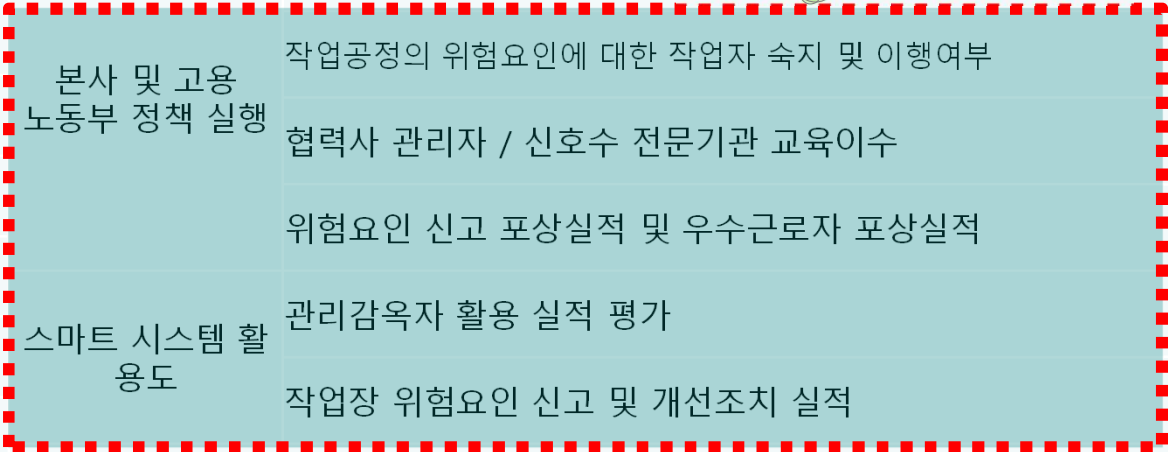
## 7) 하도급 상벌규정 기준 수립

- 입찰전 평가 / 협력사평가 / 안전관계자 평가 등을 반영
  - ▶ 하도급 입찰제한 / 관리자 상벌기준
  - ▶ 협력사 평가시 안전관리자/현장소장 평가 점수 미흡업체 관리
  - ▶ 안전관계자 평가 예)

평가대상	1분기 50점 이하 평점자	2분기 이상 연속 50점 이하 평점자
협력업체 현장소장	협력사 대표이사 경고 및 현장 방문 개선지도 2일	교체요청
협력업체 시공관리자	협력사 현장소장 경고 및 개선계획 제출	교체요청
동원개발 시공관리자	전문교육기관 특별교육	본사 특별교육
동원개발 현장소장		본사 특별교육

# 3. 안전보건관리계획 \_ (주)동원개발

평가내용		개인보호구 (9점)	안전벨트 착용, 체결률
관리자 의식(23점)	협력업체 소장의 안전의식	안전관리비 (9점)	보안경등 기타 보호구 사용률
	대표자 관심도 현장방문 및 안전점검		정산서류 성실도
	관리자 안전업무 협조		반입검사, 적정사용(현장 실투입)
교육 및 안전계획 (20점)	위험성평가 작성 제출		위험성평가 현장 이행여부 관리자 확인
	사전안전계획(장비 등) 수립	본사 및 고용 노동부 정책 실행	작업공정의 위험요인에 대한 작업자 숙지 및 이행여부
	신규채용, 특별교육 참여		협력사 관리자 / 신호수 전문기관 교육이수
	정기안전교육 참석률		위험요인 신고 포상실적 및 우수근로자 포상실적
	안전조회(TBM) 참석률		관리감독자 활용 실적 평가
안전시설물 (8점)	스마트 시스템 활용도		작업장 위험요인 신고 및 개선조치 실적
안전활동 (31점)	현장정리 및 폐기물처리상태	안전사고 발생 (-32점)	부상재해
	자체 안전점검(공동구, 장비, 안전시설, 위험요인)		중대재해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내용 숙지상태		재해 지연보고, 은폐
	위험작업 관리자 입회여부	외부점검 지적사항 (-21점)	시정조치
	위험성평가, 협의체회의 현장소장 참석		과태료
	지적사항 조치 상태		벌금



**4**  
Part

##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① 고층작업으로 인해 자재양중 시 타공종 작업자 통제 및 설치작업자 확인 철저  
→ 작업자 구분용 안전조끼 착용
- ② 화재예방 철저 \_ 지정된 장소 외에는 흡연불가 및 작업중 흡연금지
- ③ 각종 개구부 덮개 설치 상태 확인 철저
- ④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카 연장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맞게 작업 실시  
작업지휘자의 지휘 아래 작업반경 구획하여 관계자 외 근로자 접근금지함
- ⑤ 안전시설물 중 발코니 수직차폐망 임의 훼손 및 해체금지
- ⑥ 지게차 운행 작업 및 고소작업대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맞게 작업 실시
- ⑦ 사다리 사용 지양, 말비계, 이동식틀비계 등 작업발판 사용 시 실명제 부착 및 안전수칙 준수
- ⑧ 지하층 등에서의 갈기작업은 환기시설을 충분히 갖춘 후 작업 실시
- ⑨ 2/4분기 자율 점검 후 5/4까지 고용노동부 제출 \_ 자기규율체계 준수

# 4.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안전대 착용! 안전난간 설치! 작업전 안전점검(TBM)! 생명을 지킵니다.**

<p><b>1위 단부·개구부</b> 떨어짐</p> <p>단부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고정</p>	<p><b>2위 철골</b> 떨어짐</p> <p>철골 인양 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p>	<p><b>3위 지붕</b> 떨어짐</p> <p>안전모·안전대 착용 안전대부착설비 설치</p>
<p><b>4위 비계·작업발판</b> 떨어짐</p> <p>안전난간 설치, 외벽 틈 추락방호망 설치</p>	<p><b>5위 굴착기</b> 부딪힘</p> <p>작업반경 출입통제 후방영상장치 작동 확인</p>	<p><b>6위 고소작업대</b> 떨어짐</p> <p>안전대 체결 작업대 이탈 금지</p>
<p><b>7위 사다리</b> 떨어짐</p> <p>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p>	<p><b>8위 달비계</b> 떨어짐</p> <p>구멍줄 안전대 체결 2개 고정점 설치(구멍줄, 작업줄)</p>	<p><b>9위 트럭</b> 부딪힘</p> <p>이동구간 출입통제 전담유도자 배치</p>
<p><b>10위 이동식 비계</b> 떨어짐</p> <p>최상부 안전난간 설치</p>	<p><b>11위 거푸집·동바리</b> 떨어짐</p> <p>시스템동바리 사용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p>	<p><b>12위 이동식크레인</b> 맞음</p> <p>인양물 고정 철저히 하부 출입통제</p>

⑩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 숙지하여 중대재해 예방  
→ 사망사고 사례, 사전유해위험요인 확인방법, 작업별 위험요인 개선방법

⑪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1개월 이내 제출

**5**  
Part

## 협력업체별 건의사항





## 5. 협력업체별 건의사항

찬안 성성 비스타동원 신축공사

**DW** 동원개발

챙기고 또 챙기자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